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 및 주기 변경에 관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마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실시 예정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제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
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015
년 1월 1일

제2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
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제1의2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을 “예치방법”으로 한다.

제13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6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u>해야</u> ----- --.
<u><신 설></u>	<u>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015년 1월 1일</u>
1. (생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u>제9조제3항에 따른 배출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치신고·변경</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승인·변경신고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u> 5. <u>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u> 6. <u>제2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7. <u>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u> ② <u>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2020년 1월 1일	<삭제>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u>해야</u>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4. 삭 제	
5. <신 설>	5.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u>운영 · 관리기준: 2015년 1월 1</u> <u>일</u>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u>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u> <u>일</u>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u>	② ----- ----- ----- ----- ----- ----- <u>해야</u>

현행	개정안
<u>여야</u> 한다. 1. 삭 제 2.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5년 1월 1 일 3. (생략) 4.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 일	-----.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7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해야</u> -----.
1. 제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u>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2. 제1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u>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3.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에 따른 <u>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에 따른 <u>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6. 제23조제1항에 따른 <u>이동소음원의 종류: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7. 제25조 및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u> 8. ~ 15. (생략) <u>16.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1월 1일</u> 17. (생략)	<u><삭제></u> 8. ~ 15. (현행과 같음) <u><삭제></u> 17.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현행	개정안
<u>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 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 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u> 4의2. (생략) <u>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 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u> 5의2. (생략) <u>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 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 월 1일</u> 7. (생략)	<u><삭제></u> 4의2. (현행과 같음) <u><삭제></u> 5의2. (현행과 같음) <u><삭제></u> 7. (현행과 같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17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u>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6.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6의2. (생략)	6의2. (현행과 같음)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u><삭 제></u>
1. 삭 제	
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u><삭 제></u>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u><삭 제></u>
4. 삭 제	
5.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기간: 2014년 1월 1일	<u><삭 제></u>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해야</u> -----.
1.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해야</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5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u> <u>등: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u>예치방법 및 산정기준</u>	4. ----- <u>예치방법</u>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해야</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삭제	
3. 제3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u>해야</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 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u>제39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승인 대상: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13. 제4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u>16. 제48조 및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u>18. 제5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u>20. 제6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u>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삭제 <u>2. 제68조 및 별표 18에 따른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2015년 1월 1일</u>	<u><삭제></u>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삭 제></u>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7. 제18조제4항에 따른 실기시험 응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